[서식 예] 이득상환금청구의 소(수표의 지급제시기한을 넘긴 경우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주식회사◇◇은행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대표이사 ◈◈◈(소관 : ◆◆지점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이득상환금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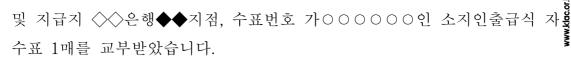
청 구 취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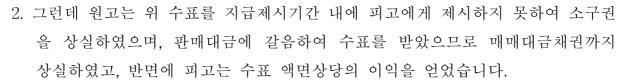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○. 수석을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에 갈음하여 소외 ●●● 로부터 피고은행이 발행한 발행일 20○○. ○. ○. 액면 금 1.000.000원, 발행지





3.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득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,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서 류

1. 갑 제1호증의 1, 2 각 수표의 앞면 및 뒷면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www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•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•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		
	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,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		
	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(수표		
	법 제63조).		
	•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		
	야 하고(수표법 제29조), 자기앞수표도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		
	하여야 함(대법원 1959. 10. 29. 선고 4292민상440 판결).		
	•거래의 통념상 소위 일반은행의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현금		
	과 같이 거래되므로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수표를 받은 경우		
	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님(대법원 1961. 12.		
	21. 선고 61다324 판결).		
	· 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수표소지인이란 수표상의 권리가		
	소멸될 당시의 소지인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함		
	(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다2497 판결).		
	·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상의 권리가		
	소멸한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행사할 수		
	없고(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429 판결),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		
	소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표소지인임을 전제로		
	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(대법원 1967. 6. 13. 선고 67다541,		
	542 판결).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, 이득상환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수표의 소지자 즉 청구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, 수표상의 권리소멸로 인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서게 할 수도 없으므로, 이득상환의무를 민법상의 추심채무의 일종으로 보아 이득상환의무자의 영업소나 주소가 의무이행지로 될 것임.
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자기 표의 발행지점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